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4
----------	-----

2024. 12.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1월 26일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우수한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을 지역의 우수 시설, 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을 보유한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 스포츠클럽 정의 개정(안 제2조제3호)
- “학교스포츠클럽등”을 각각 “학생스포츠클럽”으로 개정(안 제3조~제6조, 제11조)
-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삭제(안 제7조)
- 지역거점형·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력향상과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거점형과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분리했던 조항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명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본문에 규정된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조례 목적을 명확하게 한 것임

- 안 제2조제3호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스포츠클럽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체육 종목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부터 제6조, 제11조는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학생스포츠클럽’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8조는 제7조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지역거점형과 종목연계형으로 분리 운영했던 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합한 것이며,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 자체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을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소수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탄력적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대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무분별한 법인 및 단체가 지원해 학교 체육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사업 추진 방안에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학생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학교스포츠클럽등”을 각각 “학생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학교스포츠클럽등”을 각각 “학생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학교스포츠클럽등”을 각각 “학생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중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학생스포츠클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u> <u>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스포츠클럽”이란 「<u>스포츠클럽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u>학교스포츠클럽등</u>”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u>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u>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p>	<p><u>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u> <u>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스포츠클럽”이란 「<u>스포츠클럽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 ----- ----- “<u>학생스포츠클럽</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본계획) ① ----- <u>학생스포츠클럽</u>----- -----</p>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략)

5.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3. (생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
츠클럽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원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의

-----.

② -----
-----.

1. 학생스포츠클럽 -----

2. 학생스포츠클럽-----

3.·4. (현행과 같음)

5. ----- 학생스포츠클럽 ---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
----- 학생스포츠클럽-----

-----.

1. 학생스포츠클럽 -----

2. 학생스포츠클럽-----

3. (현행과 같음)

4. ----- 학생스포
츠클럽-----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
-----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교스포츠클럽등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 5. (생략)
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7조(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① 교육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동부를 단체 및 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은 해당 종목에 전문성이 있

 --.

② -----

 -----.

1. 학생스포츠클럽 -----

2. 학생스포츠클럽-----

3. ~ 5. (현행과 같음)
6. ----- 학생스포츠클럽 ----

<삭 제>

는 경기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으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운동부를 지역거점형 공공스포
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
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금을 교부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
북도 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
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자
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종
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스
포츠클럽(이하 본조에서 “종목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
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목연계형 공공스
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제8조(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
성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스포츠클
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스포츠 클럽등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 학생스포츠 클럽 -----

-----.

관 계 법 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

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및 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스포츠클럽 지도자 인건비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교통비, 숙박비 등)
 - 훈련경비(장비비, 유니폼비 등)
 - 운영경비(사무용품비, 비상약품비 등)
 - 기타경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8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가. 대상: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스포츠 클럽 중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전제

- 1) 인건비,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훈련경비, 운영경비로 구분해서 산출함
- 2)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기간은 2025년부터 2년간(2년 연장 가능)
- 4) 지출은 공공스포츠클럽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선정된 클럽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년간 발생

다. 비용추계의 결과

1) 인건비: 600,000천원

가) 30,000천원×5개 클럽×4년 = 600,000천원

2)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300,000천원

가) 15,000천원×5개 클럽×4년 = 300,000천원

3) 훈련경비: 200,000천원

가) 10,000천원×5개 클럽×4년 = 200,000천원

4) 운영경비: 100,000천원

가) 5,000천원×5개클럽×4년 = 100,00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합계
		-	-	-	-	-	-
세입		-	-	-	-	-	-
	소계(a)		-	-	-	-	-
세출	운영비	인건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75,000	75,000	75,000	75,000	300,000
		훈련경비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운영경비	25,000	25,000	25,000	25,000	100,000
		소계					
		소계(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 총 비용(b-a)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